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
----------	----

제출년월일 : 2000. 8. 23.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행정규제를 개선하여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내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규제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불가사유중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삭제함
(안 제12조 제2항)

나.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없이 토석채취료를 기본요율외에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24조)

4. 관계법령

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3조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제23조제3항제3호”를 “제23조제3항제1호”로 하고 동조 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생 략)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①(현행과 같음)
<p>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p> <p>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② -----</p> <p>-----</p> <p>-----</p> <p>1. -----</p> <p>-----</p> <p>2. <삭 제></p> <p>3. -----</p> <p>-----</p> <p>-----</p>
제24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원석의 입방 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제24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3조 제3항 제1호 -----
<p>② (생 략)</p> <p>③ (생 략)</p> <p>④ (생 략)</p> <p>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정 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삭 제></p>